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ISP 98)의 내용과 문제점

권 오*

요 약

본 연구는 오늘날 국제금융 또는 국제건설공사거래 외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활용되는 보증신용장을 중심으로 하여 보증신용장의 본질과 보증신용장과 관련된 국제규칙을 분석한 다음, 보증신용장에 관한 신통일규칙의 제정배경과 규정된 내용 기준의 UCP와 URDG 등과 비교하여 이 규칙의 효용성과 활용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I. 서론

보증신용장은 20세기 중엽이래 미국에서 Standby Credit라는 명칭으로 무역거래 이외의 금융거래에서 일종의 담보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후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법인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금융의 담보수단으로 발전되어 왔다.¹⁾

이에 따라 보증신용장(Standby L/C)의 발상지인 미국 은행업계의 강력한 요청을 기초로 표준보증신용장의 실무관행(standard standby practice)을 규정한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ISP 98)이 1998년 가을에 공포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통일규칙은 독특한 규정을 도입하여 우리의 은행, 商社, Maker 등이 보증신용장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동 통일

규칙을 충분히 검토해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은행들로서는 보증신용장에 대한 새로운 거래관행의 미 정착으로 인하여 이 새로운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활용되는 보증신용장을 중심으로 하여 보증신용장 거래의 해석기준이 되는 통일규칙(ISP98)의 효용성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명백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국제상거래에서 보증신용장의 특성과 활용

2.1 보증신용장의 본질과 특성

2.1.1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의 의의

신용장은 수출업자에 대한 은행의 조건부지급 확약으로서 오늘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되고 있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전공 부교수
본 연구는 2000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1) Dean Powlowic, Standby Letter of Credit : Review and Updat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23, No.4, 1991, p.391.

는 무역결제방식인데,²⁾ 그중 환어음에 담보서류로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형태의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s)은 그 동안 신용장에 기재된 종이서류(예로 선하증권(B/L) 등)의 적합한 제시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제무역거래의 촉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반면에 보증신용장은 발행의뢰인이 차입금 또는 선금 금이나 외상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발행의뢰인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발행은행이 그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보장 내지는 담보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로, 주로 무역의 거래에서 이용된다. 유럽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서(European Independent Guarantee)가 널리 이용되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은행이 은행보증서(Bank Guarantee ; L/G)를 발행하는데 법적인 제약이 있으므로³⁾ 이를 우회하기 위하여 그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보증신용장을 대신 이용하면서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남미나 극동 지역 등의 은행에서도 이용하고 있다.

2.1.2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은 용어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능과 역할, 기본적인 구조 및 법리 등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도 있다. 우선 화환신용장거래가 독립·추상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r abstraction)과 서류거래의 원칙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하고 있다.⁴⁾ 그러나 다른 당사자의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호책으로 사용되는 보증신용장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하는 논란이 많이 있어 왔으나,⁵⁾ 최근에는 여러 판례들을 통하여 보증신용장도 이러한 원리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됨이 인정되고 있다⁶⁾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제시되어야 할 서류와 그 성격이 전혀 상이하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수익자가 원인거래에서 선적의무 등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선하증권 등의 서류로부터 발행은행의 금융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이 원인거래상의 채무를 불이행(default) 또는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⁷⁾ 보증신용장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에 서면통지서 제출만으로 수익자인 대여은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행은행의 자급확약이 이루어지게 된다.⁸⁾ 따라서 화환신용장에서는 선하증권 등과 같이 제3자가 작성한 서류가 요구되지만, 보증신용장서는 발행의뢰인 측의 기본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주장하는 수

4) Carolyn Hotchkiss, Strict Compliance in Letter of Credit Law : How Uniform 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23, No.2, 1990, p.290.

5) Michael Stern , The Independence Rule in Standby Letter of Credi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52, No.1, 1985, p.223.

6) Driscoll, Richard J., "the role of stand-by letter of credit in international commerce, reflections after Ira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0, p. 468. Kozolchik, b. , "stand-by letter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Arizona Law Review*, 1982, pp. 320-321. Getz Herbert A, "Enjoying the international stand-by letter of credit : The Iranian letters of credit cases". 21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1980, pp. 190-196.

7) J.F. Dolan, *The Law of Letter of Credit*, 2nd ed, Boston : Warren Gorham & Lamont, 1991, p.104.

8) Note, "Fraud in the Transaction" : enjoining Letters of Credit during the Iranian Revolution. 93, 1980, "Harvard Law Review", p.992.

2) Katherine A Barski, "an analysis of the resent revision to article five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etter of Credit", *Commercial Law Journal*, 1997, Vol.101, p.177.

3) 미국에서는 국내법으로 은행의 과다한 보증으로 인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보증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화환신용장의 형식을 도입한 것이 보증신용장이다.

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요구된다.

2.2 보증신용장의 경제적 효용성

보증신용장은 화환신용장과 비교하여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보증신용장은 매수인에게 있어서는 화환신용장보다 위험하다.⁹⁾ 화환신용장의 경우 매도인은 신용장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서류의 충족(계약의 이행)이 없이는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¹⁰⁾ 이 메카니즘에 의해서 매수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증신용장의 경우는 매도인으로서는 단순히 환어음만 또는 어음과 함께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에 근거해서 지급요구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보증신용장의 은행수수료가 화환신용장과 비교해서 반드시 저렴하지는 않다. 그것은 보증신용장은 일종의 은행의 무담보 응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화환신용장에서 담보성이 있는 권리증권이 확보 가능한 경우보다 보증신용장의 경우가 위험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신용장이 화환신용장에 비해서 은행수수료 면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되는 것은 발행의뢰인인 매수인이 은행에 있어서 신용할 수 있는 고객인 경우에 한한다. 물론 신용이 있는 거래처의 경우에는 개개의 교섭에 따라서 큰 폭의 할인이 행해지고 있고, 실제의 수수료는 화환신용장보다는 훨씬 싸게 되어 있는 형편이다.

9) www.emag21.com/fastmag/G/10/005/199912214814.htm

10) 福島昌則, 取消不能信用状と取消可能信用状に關する一考察～新信用状統一規則の制定にせて～, 經營と經濟, 第73卷 第3號, 松竹秀雄先生退官記念號, 長崎大學經濟學會, 1993. 12. p.77.

셋째, 발행은행의 입장에서 보증신용장은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선적서류를 담보로 할 수 없다. 즉,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미리 예치하든지 또는 별도 담보를 차입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은 무담보로 응자함으로써 신용장에 근거해서 지금 실행 후에 고객이 상환에 응하지 않거나 고객이 파산했을 때는 무담보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넷째, 해상운송에서 운송서류가 종래는 선하증권이 주종을 이루었던 것이 최근에는 선하증권의 위기(The B/L crisis)문제¹¹⁾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해상운송장(Sea Waybill)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¹²⁾ 보증신용장은 거래당사자에게 화환신용장을 대신하는 새로운 합리적인 선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하증권위기의 대상으로 매매거래에 화환신용장에 대신해서 보증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을 신용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을 신용하여 보증신용장의 발행에 응해주는 은행이 있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보아서 화환신용장을 요구하여야 할만큼 매수인의 신용에 불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화환신용장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범위에 있어서도 보증신용장을 사용해서 선적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송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위기가 회피될 가능성은 있다 하겠다.

11) 이를 迅速船 船舶의 問題 또는 高速船問題(The fast ships problem)라고 부르고 있는데(日本貿易手續商素化協會, 貿易關係業務のEDIFICO에 係る諸問題, JASTPRO 92-11, 1992, pp.26-27) 이는 본선의 고속화에 은행의 화환서류처리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화환신용장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12) <http://Llib.nippon-foundation.or.jp/1998/0867/contents/078.htm>; www.ecom.go.jp/jedic/news_let/n35/knen4.htm.

2.3 화환신용장의 문제점과 보증신용장의 활용

2.3.1 화환신용장의 활용상의 문제점

첫째, 화환신용장거래는 우선적으로 복잡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신용장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수출업자에 대한 은행의 조건부지급학약이므로, 매도인이 신용장상의 서류제시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충족된 요구서류의 제시가 필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조건들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제시서류의 충족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용장하에서의 대금지급이 서류간의 하자 혹은 불일치(discrepancies)로 인하여 거절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¹³⁾ 어느 조사에 의하면 수출업자가 신용장에서 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은행에 관련서류를 최초로 제시하는 경우의 70% 이상이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며, 늦은 대금지급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¹⁴⁾

둘째, 화환신용장거래는 속도가 느리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행 은행관행상 서류취급은 L/C 조건과 서류내용의 일치 그리고 서류상호간의 일치검사를 행하는데 있어 동일 정보를 별개의 수작업으로 기재하고 있고, 서류간에 불일치를 심사하는 은행측에서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재가 서류를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¹⁵⁾ 이런 복잡한 심사질들은 관련은행에서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심사와 수작업의 중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시간의 과대한 소비와 서류의 불일치 시 서류가 수리 거절되면 정상적인 화물인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전술과 같이 본선이 도착해도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물품을 인도받는데 지장이 발생하고 선하증권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2.3.2 화환신용장을 대신한 보증신용장의 활용

첫째, 전술한 선하증권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식 선하증권의 사용이 있지만 이들은 일장일단으로 인기 때문에 현재 가장 실무적인 대안은 화물의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인도이다. 그런데 L/G에 의한 물품인도는 은행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L/G인도자체가 법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상거래관습에 근거를 둔 제도라는 점, L/G위조 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선박회사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등의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화환신용장 대신에 선적서류를 선적 후 즉시 매수인에게 직송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한 선적서류의 조회가 필요 없는 보증신용장을 사용이 검토되고 있다.¹⁶⁾

둘째, 보증신용장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보증신용장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용장조건에 따라서 발행은행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때 매도인이 은행에 제시하여야 할 서류¹⁷⁾는 화환신용장에 비교하면 서류에 관한 요구는 훨씬 간단하다.

13) www.tolee.com/html/c01295.htm

14) www.sitpro.org.uk/pubs/credits.html

15) 財經詳報社, アジアにおける貿易金融EDIに關する研究會報告書(その1), 金融情報システム, No.189, 1997, 7, pp.114-115.

16) 新堀聰, 貿易取引の理論と實踐, 三讀書房, 1993, pp.208-218.

17) 매도인이 은행에 제시하여야 할 서류는 환아를 또는 지급요구민(clear)의 것도 있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지를 언급한 매도인의 서면, 송장사본, 선화증권사본 등을 아울러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개개의 신용장규정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화환신용장보다는 간단하다.

따라서 보증신용장이 화환신용장을 대신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해서 활용되는 경우는 가격이 높고 금액이 큰 상품의 경우는 매수인이 은행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증신용장으로 바꾸는 경우, 선박의 매매와 같이 거래의 성질상 선하증권 등의 권리증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본선의 항해 중에 빈번하게 전매가 행해지는 상품거래¹⁸⁾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송함으로써 매우 신속하게 선적서류의 수도를 당사자간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보증신용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보증신용장과 관련된 국제 규칙과 ISP 98

3.1 보증신용장과 관련된 국제규칙의 제정과정

보증신용장은 단순히 채무보증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발행은행이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일 뿐 발행과 사용 그리고 조건해석 등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었다. 이에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는 서류의 개념에 계약불이행통지서를 포함시키고 있어¹⁹⁾ 보증신용장을 화환신용장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각국마다 해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상의 빈번한 마찰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1973년 3월 인도의 외환증개인협회

(Foreign Exchange Dealers Association of India)는 보증신용장에 대한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ICC은행기술실무위원회에 질의를 하였으나²⁰⁾ 동 위원회는 보증신용장의 문면에 적용문헌을 기재하였다면 통일규칙상에 명시된 화환신용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²¹⁾ 따라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상기의 ICC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보증신용장도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대상으로 명문화하였다.²²⁾ 그러나 보증신용장은 그 성질상 지급보증의 기능²³⁾을 갖고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이 신용장통일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보증신용장의 이용이 증가되면서 이에 대한 분쟁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통일규칙이 요구되었다. 원래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 UCP)의 적용범위를 화환신용장 외에 보증신용장(Stand-by L/C)에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을 보증신용장에 적용시키려고 하였으나, 보증신용장은 엄격히 말해서 화환신용장과는 다른 것이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의 유추적용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적 통일규칙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ICC나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상거래법위원회)등의 국제기구에 의하여 이 제도에 대한 국제적 통일화의 노력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ICC는 1978년에 『제

20) ICC, Decisions(1975-1979)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Publishing S.A., 1980, p.11.

21) ICC, Documents(470/304, 470/309), March 1977.

22) UCP 500 第1條.

23) Lazar sarona, Letters of credit-The Law and Current Practice-Carswell Legal Publication, 1986, p.20.

18) 한번의 항해에서 주인이 100회나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원유거래는 이러한 전형적인 예이다.

19) UCC Section 5-103(l) (b).

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s : URCG), 및 1992년에 『요구불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 URDG)』을 제정하였고, UNCITRAL은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 of Credit : 1995년)』을 각각 제정하였다. 또 최근에는 보증신용장을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단행의 통일규칙의 필요성에 의해 ICC와 국제은행법률협회가 공동으로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ISP98)을 제정하였다.

3.2 ICC의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 규칙(URCG, 1978)

URCG는 국제상업회의소가 1978년에 보증신용장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최초의 통일규칙이다. 간행물 번호 NO.325(ICC Publication No.325)로 만들어진 이 규칙의 목적은 보증에 대한 통일성과 적절한 관행을 제공함으로써 특별히 보증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²⁴⁾ 따라서 이 규칙에서는 수의자의 보증금지급의 요건으로서 법원의 집행판결이나 중재판정서 또는 의뢰인(수출업자)의 지급동의서를 요구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보증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이나 중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당시의 보증신용장은 주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되었는데, URCG는 중동산유국들의 위압적

자세를 국제규칙을 통하여 억압하려고 시도한 점에서는 의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수의자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불안하게 하였고 결국 국제거래 계에서 외면 당하게 되었다.

3.3 ICC의 요구불보증²⁵⁾에 관한 통일규칙(URDG, 1992)

전술한 바와 같이 ICC는 1978년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한 바가 있었으나, 이 규칙은 수의자 측의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실제적인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국제적인 보증관행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무에 별로 쓰이지 아니하였다.²⁶⁾ 이에 따라 ICC에서는 UNCITRAL의 도움을 얻어 보증신용장에 관한 새로운 통일규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ICC는 1988년초 제1초안을 작성하여 UNCITRAL에 제출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1992년 4월에 “요구불보증에 관한 통일규칙”(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을 문서번호 제458호(Publication No.458)로 제정하였다.²⁷⁾ 이는 채무자측의 실제적인 채무불이행 여부를 면나서 단순히 보증조건에 일치하는 채권자 측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독립적 보증을 규율한 규칙이라 할 수 있다.²⁸⁾ 본 규칙은 A. 규칙의 적용범위와

25) 요구불보증은 그 명칭이나 표기에 관계없이 은행·보험회사 또는 기타 조직이나 사람이 약속조건과 부합하도록 지급청구서와 보증서에서 특정되는 다른서류가 제시되는 데에 금전을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부여되는 모든 보증, BOND, 기타 지급약속을 의미하는데, 이를 請求拂保證이라고도 한다.

26) 徐惠濟, 國際去來法~國際契約法·國際私法~, 法文社, 1996, pp.862-866.

27) Bergsten E.E., A new regime for international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 of Credit : the UNCITRAL Draft Convention on Guaranty Letters, 27, International Lawyer, 1993, p.859.

24) R.I.V.F.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Kluwer Law Internation and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Second Edition, 1996, p.22.

적용, B. 정의조항과 총칙, C. 의무와 책임, D. 청구, E. 종료조항, F. 준거법과 관할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칙은 최초 작업 시에는 URCG보다는 독립성을 강조시켜 “Dependent Guarantee” 아니라 “Simple Demand Guarantee”的 성격을 부각시키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URDG는 “수의자가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채무자(수출업자)가 원인관계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과 그 채무불이행의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제시할 것을 요구²⁹⁾”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신용장의 독립성을 크게 제한하는 것인 바, URDG도 국제거래 계에서 외면 당하게 되었다.

3.4 UNCITRAL의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 (1995)

ICC와는 별도로 UN 산하의 UNCITRAL에서 1988년 제21차 총회에서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적인 협약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준비를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 1995년 12월 11일 제50차 유엔총회에서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 of Credit)”을 채택하였다.³⁰⁾ 본 협약은 7장 29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증신용장의 독립성을 성문화하였고 국제성을 강조한 것이다. 본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의자의 권리 남용적 청구에 대하여 지금 거절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³¹⁾

28) R.I.V.F. Bertrams, op. cit., p.22.

29) URDG 第20條.

30) 통상 이를 ‘UN협약’이라고 부른다.

UN협약에서는 보증서는 독립적·취소불능·무조건적(Independent, Irrevocable and Unconditional)이어야 한다는 속성 제한으로 인하여 비준 국가 수의 부족으로 효력발생이 지연되다가 최근 2000년 1월 1일에 정식 발효되었다.³²⁾

3.5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ISP98, 1998)

보증신용장은 이를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국제적 통일규칙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³³⁾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ICC와 국제은행법률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1998년 4월 6일의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이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약칭은 ISP98)이다.³⁴⁾

3.5.1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의 제정배경

3.5.1.1 신용장통일규칙 적용의 한계

ICC는 1933년 제정하여 개정한 UCP와 1992년에 제정·공포한 독립적 은행보증에 관한 URDG 이외에 새로이 ISP를 1998년에 제정·공포하였다. ICC 스스로 이 규칙은 많은 점에서

31) 즉, 본 UN협약은 수의자의 권리남용적 사항들을 구체화 함에 있어서 ICC의 URCG나 URDG보다는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 2000년 3월 3일 현재 본 UN협약의 가입국가는 벨리루스, 엘살바도르, 파나마, 미국이며, 비준국가는 에콰이도르, 엘살바도르, 쿠웨이트, 파나마, 튜니지이다.

33) 朴錫在, 스탠드바이(Standby)信用狀의 活用上의 問題點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6, pp. 108~109

34) 이 통일규칙의 원어적 번역은 “국제적 스탠바이신용장 관행”이지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보증신용장에 관한 신통일규칙” 혹은 “ISP98”을 혼용한다.

UCP와 일치함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 양자는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UCP 4차 개정부터 보증신용장에 관해서도 동 규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가능한 범위 내에서 UCP의 규정을 보증신용장의 거래에도 적용시켜 왔다. 그러나 상업신용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대금결제수단으로서 무역거래에 주로 이용되는데 반하여 보증신용장은 무역 외거래에 이용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상업신용장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 UCP의 조항에 의해서는 보증신용장을 충분히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³⁵⁾

즉, 보증신용장은 일반 화환신용장과는 그 사용목적을 달리하고 있는데 동 규칙에서는 이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일반의 화환신용장과 같이 동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해석상 문제점이 제기되었다.³⁶⁾ 원래 UCP는 화환신용장을 위하여 제정·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동 규칙의 여러 조항 가운데 보증신용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극히 한정되어 총칙과 정의,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독립·추상성의 원칙, 의무와 책임 등에 불과하였다.³⁷⁾ 그래서 ICC는 새로 ISP를 제정·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3.5.1.2 미국업계의 요청

미국에서는 보증신용장이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을 재정할 때 미국의 은행업계는 보증신용장에 대한 적절한 규정의 설정을 희망하였으나 그것이 현

실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국무성은 同國의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와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Association, Inc.(IFSA)에 대해 은행, 상사, Maker 등 보증신용장을 이용하는 전세계 업계의 의견을 기초로 한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의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3.5.2 신통일규칙의 저작권과 구속력

3.5.2.1 신통일규칙의 저작권

본 통일규칙의 영문명칭은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이고 조문의 영문소책자는 ICC Publication No.590으로서 1998년 10월에 국제상업회의소가 발간하였다. 그러나 본 통일규칙의 저작권은 미국의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가 보유하고 있어 종래의 신용장통일규칙 등의 경우와는 달리 국제상업회의소 자체로서는 본 통일규칙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³⁸⁾

3.5.2.2 신통일규칙의 구속력

개개의 보증신용장이 통일규칙에 따른다는 취지 즉, 본 통일규칙의 구속력은 그 신용장면에 “This undertaking is issued subject to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또는 “Subject to ISP98” 그리고 기타의 이와 유사한 기재에 의해 분명하게 된다.

35) 柳重遠, 保證信用狀과 保證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ISP), 通商法律, 1999, 12, p.

36)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984-1986, R. 87, p.3.

37) 朝岡良平, 逐條解說 信用狀統一規則, 東京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5, p.28.

38) 飯田勝人, 實務慣行を規定したスタンダードバイ信用狀統一規則(ISP98)の実施, 経済法令研究會, 銀行法務, No.581, 1999, 4, p.18-22.

IV. 보증신용장에 관한 신통일규칙(ISP 98)의 내용과 특징

4.1 신통일규칙의 구성

본 통일규칙은 다음과 같은 標題를 모두 합하여 합계 8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문이 세분되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선 본 통일규칙에서는 종래의 통일규칙과는 달리 조문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Article”이 아니라 “Rule”이 사용되고 있다.

| | |
|-------|--|
| 제1규칙 | 총칙(Rule 1 General Provisions) (11개 조항) |
| 제2규칙 | 채무(Rule 2 Obligations) (7개 조항) |
| 제3규칙 | 제시(Rule 3 Presentation) (14개 조항) |
| 제4규칙 | 점검(Rule 4 Examination) (21개 조항) |
| 제5규칙 | 통지, 배제 및 서류의 처분(Rule 5 Notice, Preclusion, and Disposition of Document) (9개 조항) |
| 제6규칙 | 신용장의 양도, 대금의 양도 및 범작용에 의한 권리이전(Rule 6 Transfer, Assignment, and Transfer by Operation of Law) (14개 조항) |
| 제7규칙 | 취소(Rule 7 Cancellation) (2개 조항) |
| 제8규칙 | 보상채무(Rule 8 Reimbursement Obligations) (4개 조항) |
| 제9규칙 | 시간의 정산(Rule 8 Timing) (5개 조항) |
| 제10규칙 | Syndication and Participation (2개 조항) |

4.2 UCP와 URDG를 비교한 신통일규칙의 독자규정 내용

지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라 함) 및 請求出給保證(狀)統一規則(ICC Publication No.458, 이하, URDG라 함)과 對比하여 본 통일규칙의 독자적인 규정내용을 고찰하기로 한다.³⁹⁾

4.2.1 신통일규칙의 적용과 준거법

본 통일규칙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본 통일규칙을 수정·적용 배제시킬 수 있어, 준거법을 보충할 수 있지만, 보증신용장이 동시에 준거하는 UCP·URDG 기타규정과 본 통일규칙이 충돌할 때는 본 통일규칙이 우선한다.⁴⁰⁾ 또한 본 통일규칙은 보증신용장의 발행권한, 양식 또는 사기 등에도 지급의 항변을 정의·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정은 준거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⁴¹⁾

4.2.2 보증신용장의 발행자와 전자적 제시의 수용

본 통일규칙은 보증신용장발행자의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발행“은행” 대신에 발행인(Issuer), 확인“은행”은 없고 대신에 “확인을 추가한 자(Confirming Bank)”, 지정“은행” 대신에 지정된 자(Nominated Person)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적으로 구성된 서류의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에 관련되는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 인증(Authentication),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및受信(Receipt)의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있다.⁴²⁾

4.2.3 발행인의 지점이나 사무소의 취급규정과 제시수단의 기재여부에 관한 규정

보증신용장의 발행인 등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발행인의 지점이나 기타의 사무소는 동일 국내에 있는 경우에도 발행인과는 별개의 者로 취급하고 있다.⁴³⁾

또한 보증신용장에 제시의 수단에 관한 기재

39) 飯田勝人, 前掲論文, p.18-22.

40) ISP98 第1-01規則, 第1.02規則.

41) ISP98 第1.05規則.

42) ISP98 第1.05規則.

43) ISP98 第2.02規則, UCP 5000 第2條.

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종이를 근거로 한 서류(Paper Document)를 제시하여야 하며,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된 서류는 이를 수신하는 발행인등이 그것을 근거로 종이에 의한 서류를 작성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종이를 근거로 한 서류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⁴⁴⁾

4.2.4 할부지급 시 제시

본 통일규칙에 의한 보증신용장이 예를 들면 每月 1회의 지급제시를 1년간을 하도록 한 할부지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어느 것이 지급제시를 태만히 할 때도 신용장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각각의 제시가 개별성을 가지는 것 (separateness of each presentatio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次回의 적시의 제시(혹은 적시의 再제시)가 가능하다.⁴⁵⁾

4.2.5 만료일 연장 등 수의자의 요구

보증신용장의 만료일을 연장하든지, 또는 그 대신에 사용가능금액을 지급한다(extend or pay)고 하는 수의자의 요구는 (1) 지급을 청구하는 제시이거나 (2) 수의자가 요구된 일자까지 만료일을 연장하는 조건변경(amendment)에 동의하는 것, 발행인에 대해 그 조건변경에 관하여 발행의뢰인의 승낙을 한 후 조건변경을 발행하기 위한 재량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요구하는 것, 그 조건변경이 발행된 경우에는 지급청구를 취하하는 것 및 점검·지급거절의 통지 때문에 본 통일규칙에 의해 허용된 최장기간에 동의하는 것을 묵시하는 것이 된다.⁴⁶⁾

4.2.6 제시장소와 제시의 최종일

본 통일규칙에 의하면 보증신용장에 기재된 제시장소가 최종 영업일에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폐쇄되어 그 폐쇄 때문에 적시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신용장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제시의 최종일은 제시장소의 영업재개일 후 30일간(thirty calendar days)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시장소가 폐쇄된 경우 또는 폐쇄가 예상되는 경우는 발행인은 보증신용장 중에 또는 수의자가 수령하는 통신 중에 기타의 합리적인 제시장소를 수권할 수 있다. 그 때는 (1) 提示는 그 합리적인 제시장소에서 행해져야 하며 (2) 통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제시의 최종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30일에 만기가 되며, 그 적시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제시의 최종일은 현재 제시의 최종일 후 30일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⁴⁷⁾

4.2.7 서류상호간의 모순사항에 대한 점검기준과 “non-documentary conditions”

보증신용장은 복잡하고 복수의 원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고 제시된 서류가 사호 모순되는 것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본 통일규칙은 보증신용장이 명확하게 다른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인 또는 지정된 자는 서류상호간의 모순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⁴⁸⁾

또한 보증신용장의 “non-documentary conditions”는 무시되는데, (1) 보증신용장이 어느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거나 (2) 발행인이 자기의 기록 또는 발행인의 통상의 사무(the issuer's own records or within the issuer's normal operations)에 의해서

44) ISP98 第3.06規則.

45) ISP98 第3.07規則, UCP 500 第41條.

46) ISP98 第3.09規則.

47) ISP98 第3.14規則, UCP 500 第17條, URDG 第213條.

48) ISP98 第4.03規則, UCP 500 第13條 a項.

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와 같은 조건을 “non-documentary conditions”이라고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前記 (2)의 구체적인 예가 나타나 있다.⁴⁹⁾

4.2.8 발행인·확인을 한 자의 재편, 합병 또는 명칭의 변경

발행인·확인을 한 자에 관하여, 재편, 합병 또는 명칭이 변경이 된 경우는 제시서류 중에 있는 발행인·확인을 한 자의 명칭은 구 명칭에 의해서도 좋고 신 명칭에 의해서도 좋다라고 규정되어 있다.⁵⁰⁾

4.2.9 서류의 원본(Original)

본 통일규칙은 제시되는 서류는 원본(Original)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원본의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만, UCP 20조 b항의 규정과는 달리, 본 통일규칙은 “외견상 원본에서 복제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는 그 서명 또는 인증이 원본인 경우에는 원본으로 간주된다⁵¹⁾”로 규정하여 통상의 실무감각에 적합한 규정을 두고 있다.⁵²⁾

4.2.10 지급거절통지

본 통일규칙은 지급거절통지가 서류의 지급제시후 불합리하지 않은 시간 내에(소위 상당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1) 제시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는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진 지급거절통지는 불합리하지는 않다

49) ISP98 第4.11規則.

50) ISP98 第4.14規則.

51) A Document which appears to have been reproduced from an original is deemed to be an original if the signature or authentication appears to be originals.

52) ISP98 第4.15規則 c項, UCP 500 第20조 b項.

(not unreasonable)고 되어 있지만, 7영업일 이 초과된 지급거절통지는 불합리하며 (2) 지급거절통지는 원칙적으로 “Telecommunication⁵³⁾”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기타의 신속한 수단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지급거절통지에는 지급거절의 기초가 된 모든 모순사항(discrepancy)을 기재하여야 하며(제5.02규칙), 적절한 통지수단에 의해 적절한 지급거절통지를 소정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태만히 함으로써 서류에 모순사항이 있던 것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preclusion)은(제5.03규칙) 본 통일규칙도 UCP 도 동일하지만, 본 통일규칙에서는 UCP와는 달리 (3) 지급 거절통지 중에 지급제시가 만료일 후에 된(later presentation) 취지를 기재하지 않을지라도 지급거절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제5.04규칙) 또 (4) 지급 거절통지 중에 서류의 소재·처분을 명확히 하지 않을지라도 지급거절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⁵⁴⁾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4.2.11 발행인에 대한 발행의뢰인의 이의통지

본 통일규칙에는 UCP에도 URDG에도 규정되지 않은 발행인에 대한 발행의뢰인의 이의의 통지(applicant notice of objection)가 명기되어 있다(제5.09규칙). 즉, 발행의뢰인은 신속한 수단을 사용하여 적시의 통지를 행함에 의해, 발행인이

53) UCP 500은 무역거래에서 書狀이나 서류 등의 송달하는 통신수단을 우편(mail)과 Telecommunication으로 크게 구분하고 Telecommunication을 Telephone과 Teletransmission으로 세분하면서 遠距離通信手段의 총칭인 Teletransmission에는 Cable, Telegram, Telex, Telefax, Facsimile, SWIFT, 電子メール(E-Mail), EDI 등에 의한 송수신방식을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朝岡良平, EDIセミナー・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係る法的問題, 早稻田商學同窓會, 早稻田商學第368・367合併號, 1996, 1. p.224).

54) 단 지급이 거절된 서류는 제시인의 합리적인 指示에 따라返送, 보관 또는 처분되어야 한다)

55) ISP98 5.02-5.07規則.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제시에 대해 지급한 경우에 적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발행의뢰인이 서류의 수리후 불합리하지 않은 기간 내에 이의를 기재한 통지를 발행인에 송부하는 것이 이의성립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

4.2.12 신용장의 양도회수와 양수시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서류제시

양도가능한(transferable) 신용장의 양도는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에 대립되는 형태로, 본 통일규칙은 그 금액에 관하여 복수회 양도할 수 있다는 것⁵⁶⁾을 명백히 하고 있다.⁵⁷⁾ 또한 보증신용장에서 수의자의 법정상속인, 법인의 청산인, 재산보전관리인, 승계인으로서의 법인 등이라 청하는 자가 수의자로부터 신용장의 양도를 받은 경우,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본 규칙은 “법의 작용에 의한 권리의 이전(transfer by operation of law)”이라는 표제의 시작에 함께 4개의 조문⁵⁸⁾을 정하여 규정해두었는데, 이것은 UCP, URDG에는 규정되지 않은 본 통일규칙의 독자의 규정이다.

4.2.13 발행의뢰인의 발행인에 대한 손실보상의무

본 통일규칙은 발행의뢰인은 (1) 보증신용장 중에 선정된 또는 발행지에서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법·관행이 부과되는 것 (2) 타인에 의한 사기·서류의 위조·위법행위 또는 (3) 확인이 추가된 신용장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 확인을 가한 자의 채무이행으로부터 발생한 발행인에의 청구, 발행인의 채무 및 의무(변호사 비용을 포함

56) . . . drawing rights may be transferred in their entirety more than once.

57) ISP98 第6.02規則, UCP 500 第48조 9項.

58) ISP98 第6.12-6.14規則

함함)에 관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⁵⁹⁾

4.2.13 “Syndication”와 “participation”에 대한 규정에 관한 규정

“Syndication(공동개설)”에 관하여 복수의 발행인에 의한 보증신용장이 제시될 수 있는 거래선으로서의 발행인을 특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제시는 언제라도 발행인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제시는 발행인을 구속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⁶⁰⁾

또한 본 통일규칙은 보증신용장의 “participation(지분의 참여)”에 관하여 (1)발행의뢰인과 발행인과의 사이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은 발행의뢰인 및 제시인에 대한 발행인의 권리를 매각(채권양도) 할 수 있고 매수인(참가자)인 자에 대하여 관련하는 발행의뢰인의 정보를 극비로 개시할 수 있고 (2) 발행인에 의한 매각은 보증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인의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보증신용장의 수의자와 매수인(참가자) 사이에 하등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⁶¹⁾

4.3 신통일규칙의 특징

4.3.1 국제조약 및 협약과의 조화

신통일규칙은 UCP와 URDG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보증신용장에 관하여 분리 제정되었으며,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1995)과도 그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⁶²⁾

59) ISP98 第8.01規則.

60) ISP98 第10.01規則.

61) ISP98 第10.02規則.

62) IBLP,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Fall 1997 Draft,

4.3.2 UCP와 스타일과 접근방식의 상이

ISP는 은행가 및 상인들뿐 아니라 또한 보증 신용장 법률 및 관행에 활동적으로 연루된 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⁶³⁾ 양식 및 접근에 있어서 UCP와 다르다. 즉, 국제상업회의소는 ISP98의 서문(informational note)에서 ISP는 스타일과 접근방법에서 신용장통일규칙(UCP)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ISP는 은행원들과 상인뿐만 아니라 보증에 관한 법률(Standby Law)과 관련하여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 신용평가기관, 기업의 회계 및 재무담당자, 신용관리책임자, 정부관리, 다양한 형태의 규제자(Regulators), 많은 다른 세련된 이용자들 그리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정교한 이용자들의 무리들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4.3.3 전문인들을 위한 해석지침서 역할과 적용

보증신용장은 분쟁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보증신용장의 본문은 상업신용장의 거래에서는 부딪치지 않는 엄밀성(Scrutiny) 혹은 정밀한 심사유형이어야 한다. 따라서 ISP98은 변호사 및 판사가 보증신용장에 관한 관행을 해석할 경우에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제정되었다.⁶⁴⁾ 그러나 상업신용장 또는 독립적 은행보증, 보증신용장은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구별이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므로 ISP는 UCP나 URDG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적용키

pp.1-2

63) 예를 들면 신용도 평가기관, 회사의 회계담당자 및 신용 관리자, 정부관리, 광범한 종류의 규제자 및 이용자들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정교한 이용자들의 무리를 들 수 있다.

64)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Practice Inc, 1997, Preface.

로 하는 명시적인 문언이 보증신용장에 기재되었을 때 한하여 적용키로 하였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어떤 형식의 보증서에 UCP 또는 URDG, ISP 중에서 어느 것을 그 거래에 적용할 것인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4.3.4 전자적 수단사용의 명문화

ISP98의 특징 중 하나는 화환신용장이 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보증신용장은 유통성 서류제시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자메시지 형태의 서류제시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SWIFT가 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전자적 수단사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ISP98의 용어정의에서는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와 전자적 기록에 의한 인증(authenticate), 전자적 기록(electronic record),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한 접수(receipt), 원본(original)등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제시의 매체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정하면 전자적 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⁵⁾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는 ISP98이 물품매매에 적용된다면 전자식 선적서류의 제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항후에 개정될 신용장 통일규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4.3.5 법률과의 상충문제와 당사자에 의한 ISP조문의 변경허용

ISP98은 민간기구인 ICC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간 체결되는 조약, 협약, 행정협정 등과는 차원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ISP가 법률과 상충될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이 우선한다. 한편 당사자는 보증신용장의

65) ISP98 第1.09規則, 第4.06規則.

본문(Text)에 명시적 규정을 둘으로써 ISP의 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 보증신용장에 관한 신통일 규칙의 활용상의 문제점

5.1 준거법 적용상의 문제

우선 ISP에 대한 각국의 신용장 전문가들이 내리는 비판 중 가장 많은 사항은 보증신용장이 명확하게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유엔 협약을 삽입하기로 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⁶⁶⁾ 즉, ISP규칙 1.03(c)은 만일 국제적 보증신용장이 다른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독립적 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이 그 신용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그 결과 ISP는 다른 경우라면 그 협약의 적용규칙 하에서 유엔협약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을 보증신용장에 유엔협약을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5.2 지역적 한계성의 문제

신통일규칙에 대한 필요성은 세계 도처에서 동일하지는 않으며 대체로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실제적이며 현실적이다.⁶⁷⁾ 따라서 당분간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 규칙의 효용성에 대하여 동일한 느낌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동 규칙은 지역적 한계성을 지닌다는 한계성이 있다.

66) P.S. Turner, B. Wunnicke and D.B. Wunnicke, op. cit., pp.8-9.

67) J.P. Mattout, "Jean-Pierre Mattout on injunctions, the draft standby rules and first demand guarante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3. No.3. Summer 1997. p.12.

5.3 내용의 복잡성과 난해성

신통일규칙은 보통 ICC에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시도하는 여타의 방식과는 달리 그 규칙이 매우 복잡하고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다. ICC측에서는 비 법률가들이 규칙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단순한 규칙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동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무역업자 및 은행업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난해한 문제점이 있다.

5.4 준거법 적용상의 문제

SIP98의 규정상 발행은행이 서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조건⁶⁸⁾을 무시할 것을 요하는 것과 발행은행이 자기 자신의 재량으로 그 규칙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규정은 서로 모순이 있다. ISP98 제4.11규칙은 발행의뢰인이 서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조건을 무시할 것을 요구하지만, ISP98 제3.11규칙은 발행은행이 그 규칙을 권리 포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만일 서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조건이 발행은행의 확약을 ISP 규칙 1.10에서 기술된 보증신용장의 성질과 전적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만든다면 그 확약은 신용장이 아니며 신용장에서 동 규칙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ISP규칙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⁶⁹⁾

5.5 발행은행 책임규정상의 문제

발행은행이 수익자가 아닌 제시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언제나 발행은행의 책임을 없애주기로 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 즉, ISP98 제4.13(a)규칙은 제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 즉 발행은행, 확

68) 서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조건은 서류를 제시함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69) P.S. Turner, B. Wunnicke and D.B. Wunnicke, op. cit., p.10.

인은행 또는 그 보증신용장 하에서 지급을 지정하는 지정은행은 “수익자의 신원을 확인할 아무런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13(b)규칙은 청구권 또는 전달서류에서 지정된 계정에 대한 지급은 비록 수익자가 그 계정에 대한 아무런 접근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수익자에 대한 발행은행의 의무를 면제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의 목적은 은행이 최소한의 주의를 행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수익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이 행해진 때에도 명백히 은행을 면제하고자 함으로 보이지만⁷⁰⁾, 동 규칙은 첫째, 은행의 주의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수행된 때 진실의 수익자는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며 최종손실은 수익자가 아니라 발행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둘째 사기와 상업적 범죄가 대단히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UCP와 협약 내에서의 표준과 유사한 어떠한 행위의 표준이 ISP에서 생략된 것은 오도된 것처럼 보인다.

5.6 Fraud Rule에 관한 규정제외

보증신용장의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자가 그것의 독립·추상성을 악용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즉, 수익자와 발행의뢰인간 기본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어 발행의뢰인의 의무불이행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질적인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의 의무불이행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지급한 후 발행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발행의뢰인인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발행의뢰인이 기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로 인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였다면 수익자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서의 소송에 따른 많은 희생을 감당하여야 한다.

종래부터 신용장거래를 둘러싸고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수출상의 사기를 이유로 수입상이 신용장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사전에 금지시키는 법적 수단인 금지명령 혹은 지급정지명령(Injunction)⁷¹⁾을 신청한 예가 많았다. 이에 대해 미국의 UCC 종전 제5-114조 (2)항 (b)에서 동 취지를 성문화하였다. 그 후 UCC에 관한 1994년 개정 제5-109조는 종전 제5-114조의 규정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그 동안 해석상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음을 감안하여, 사기와 위선이라는 표제로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발행의뢰인이 UCC에 규정된 사기와 위조에 관한 요건을 주장·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지급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Injunction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UCP나 URDG, 또는 ISP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UNCITRAL UN협약이나 URCG 제19조는 부당한 청구(Improper Demands)라는 표제를 붙여, 서류의 위조 등 몇 가지 경우에는 부당한 청구로 간주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SP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으나,⁷²⁾ 제1조 제5항에서 명문으로 동 규칙은 독립·추

71) 이는 留止命令, 禁止命令, 差止命令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신용장의 獨立·抽象性去來에 惡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UCP에도 規定이 있고 法院의 適用時에도 제출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신용장의 기초를 형성하는 계약이나 거래에 사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亟히 制限的으로 認定되고 있다(Katherine A. Barski, an analysis of the resent revision to article five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etter of Credit, Commercial Law Journal, 1997, Vol.101, p.177).

72) ISP 98, 第1條 第7項

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Fraud Rule에 관한 규정은 제외하였음을 천명하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국제금융 또는 국제건설공사거래 등의 국제상거래에 있어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신용장의 본질과 보증신용장과 관련된 국제규칙을 분석한 다음, 보증신용장에 관한 신통일규칙의 제정배경과 규정된 내용 기준의 UCP와 URDG등과 비교하여 이 규칙의 효용성과 활용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본 규칙의 제정의의와 활용상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ISP98은 국제적으로 이용도가 증가되고 있지만, 그 준거법이 불확실한 보증신용장에 대한 최초의 통일된 준거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 우선적인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본 규칙의 내용이 자세하고 현실적인 거래관행을 방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향후 보증신용장에 관한 국제거래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규칙이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이 전세계적인 통일규칙으로 활성화된다면 향후 보증신용장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각국의 임의적인 판결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일적이고 일관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ISP98은 UCP보다 더 복잡하지만 ISP는 보증신용장의 본문을 더 간단하고, 표준화되고, 간소화되게 만드는 것 및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분명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결책의 제공을 의도하였다. 또한 ISP의 표현은 어음발행 또

는 지금이 의심될 때에 보증신용장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⁷³⁾ 이러한 의도는 향후 보증신용장의 해석에 매우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ISP는 원래 보증신용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미국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미국이 주도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미국 은행계에 의하여 매우 환영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주로 미국의 환경에 맞추어져 작성되었다는 지역적 한계성으로 인하여 세계적 보편적 인정을 받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전세계적인 보증신용장의 준거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지는 의문이 된다.

넷째, ISP는 국제적 관행과 일치되도록 내용을 설정하고 있고 실행가능하고 포괄적인 규칙을 의도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나, 그 내용이 매우 어렵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에 힘입어 얼마나 전세계적으로 보급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 朴錫在, 스탠드바이(Standby)信用狀의 活用上의 問題
點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6.
- 飯田勝人, 實務慣行を規定したスタンダードバイ信用狀統一規則(ISP98)の實施, 經濟法令研究會, 銀行法務, No.561, 1999, 4.
- 福島昌則, 取消不能信用狀と取消可能信用狀に關する一考察, 經營と經濟, 第73卷 第3號, 松竹秀雄先生退官記念號, 長崎大學經濟學會, 1993. 12.

73) 朴錫在, 前揭論文, pp.510-514.

- 徐憲濟, 國際去來法~國際契約法·國際私法~, 法文社, 1996.
- 新堀聰, 貿易取引の理論と實踐, 三嶺書房, 1993.
- 柳重遠, 保證信用状斗 保證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 (ISP), 通商法律, 1999, 12.
- 日本貿易手續簡素化協會, 貿易關係業務のEDI化に係る諸問題, JASTPRO 92-11, 1992.
- 財經詳報社, アジアにおける貿易金融EDIに関する研究會報告書(その1), 金融情報システム, No.189, 1997, 7.
- 朝岡良平, EDIゼジネ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係る法的問題, 早稻田商學同攻會, 早稻田商學第366・367合併號, 1996, 1.
- Bergsten E.E., A new regime for international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 of Credit : the UNCITRAL Draft Convention on Guaranty Letters, 27, International Lawyer, 1993.
- Carolyn. Hotchkiss, Strict Compliance in Letter of Credit Law : How Uniform i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23, No.2, 1990.
- Dean Powlowic, Standby Letter of Credit : Review and Update,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23, No.4, 1991.
- Driscoll, Richard J., the role of stand-by letter of credit in international commerce, reflections after Ira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0.
- Getz, Herbert A., Enjoying the international stand-by letter of credit : The Iranian letters of credit case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No.21, 1980.
- IIBLP,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Fall 1997 Draft.
- J.F. Dolan, The Law of Letter of Credit, 2nd ed, Boston : Warren Gorham & Lamont, 1991.
- J.P.Mattout, Jean-Pierre Mattout on injunctions, the draft standby rules and first demand guarantees,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3. No.3. Summer 1997.
- Katherine A. Barski, an analysis of the resent revision to article five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etter of Credit, Commercial Law Journal, 1997, Vol.101.
- Kozolchyk b., stand-by letter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Arizona Law Review, 1982.
- Lazar sarona, Letters of credit-The Law and Current Practice-Carswell Legal Publication, 1986.
- Michael Stern , The Independence Rule in Standby Letter of Credi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52, No.1, 1985.
- Note, Fraud in the Transaction : enjoining Letters of Credit during the Iranian Revolution. Harvard Law Review. No.93, 1980.
- R.I.V.F.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Kluwer Law Internation and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Second Edition, 1996.
- <http://Llib.nippon-foundation.or.jp/1998/0867/contents/078/htm>
- www.ecom.go.jp/jedic/news—let/n35/knen4.htm
- www.emag21.com/lastmag/G/10/005/199912214814.htm
- www.sitpro.org.uk/pubs/credits.html
- www.tolee.com/html/col295.htm

A Study on the Provisions and Some Problems of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O, Kwon*

Abstract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has been carefully crafted for use with standby letters of credit. ISP98 is expected to become widely used for standby letters of credit commencing January 1, 1999. These new practices have been ratified and jointly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same organization that provided us with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UCP500.

The intention behind drafting ISP98 was to consolidate common and accepted practices applying to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to set a worldwide standard. ISP98 gives issuing organizations a set of practices that are free from the anomalies that arise when UCP500 is applied to Standby Letters of Credit.

This paper focuses on ISP98 provisions that may lead to changes in forms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reimbursement agreements, that may lead to changes in standby practices, that may alert parties to issues they had not previously focused upon, or that parties may wish to limit or vary. This paper also focuses on differences between ISP98 and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UCP 500).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Science, Hang-Sung University.